

청탁금지법 상담기록부

상담일시	2019. 10.	상담장소	감사담당관실
신청자	ㄱㄱㄱ	상담자	청탁방지담당관
상담유형	부정청탁 / 금품수수 / 외부강의 / 기타		
상담내용	(질의) 직무관련자가 개최하는 공식행사에서 주최 측이 숙식 및 교통 여비를 부담하는 경우 금품등의 수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 청탁금지법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제3항제6호에 의거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공식적인 행사, 통상적인 범위, 일률적으로’의 의미가 중요한 사항으로 아래사항을 신중히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 (공식적인 행사)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 행사에 한정되고,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의 기관에서 주최하여 열리는 행사 · 주최자 및 참석자, 행사 목적 및 내용, 비용부담 등 행사 운영에 관한 내부 결재의 존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통상적인 범위) 유사한 종류의 행사에서도 동일하게 제공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수준의 금품등을 의미 · 유사한 종류의 행사, 행사장소 및 목적, 참석자 범위 및 지위, 주최자의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일률적으로)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차등 가능		
비 고			